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번 안 호	15164
------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
발의자 : 이주희 · 최혁진 · 문진석

강득구 · 용혜인 · 윤후덕

이훈기 · 손 솔 · 전종덕

박정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현장의 부실 관리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,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·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거나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.

또한, 상대적으로 사고 피해처리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·소규모 공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,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.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「전기공사업법」 등 유사 입법례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정보통신공사업에도 손해 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보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

공체에 가입하도록 하고, 발주자가 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·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, 피해를 입은 국민 및 발주자,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35조, 제35조의2 및 제78조제1항제6호의2, 제6호의3 신설).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“타인에게”를 “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타인에게”를 “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”로 한다.

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)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빌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③ 시 · 도지사는 빌주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, 총공사금액과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8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제6호의4부터 제6호의8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6의2.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

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람

6.의3.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도급비

용 계상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

입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i)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<u>타인에게</u>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	제35조(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해당 공사 목적</u> <u>물 또는 제3자에게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<u>타인에게</u>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</u> <u>제3자에게</u> ----- -----.
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④ (현행과 같음) <u>제35조의2(공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)</u>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

	<p><u>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시 · 도지사는 빌주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, 총공사금액과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제7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78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	1. ~ 6. (현행과 같음) 6의2. 제3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람
<u><신 설></u>	6의3.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의 도급비용 계상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험

	<u>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</u>
<u>6의2.</u> ~ <u>6의6.</u> (생 략)	<u>6의4.</u> ~ <u>6의8.</u> (현행 제6호의2 부터 제6호의6까지와 같음)
7. ~ 9. (생 략)	7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